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2022-04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모집기간 : 2022. 8. 1.(월) ~ 2022. 8. 15.(월) (15일간)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3. 모집인원 : 20명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단체추천
5. 응시자격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6. 선정기준
 - 사회복지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
 -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7. 선정방법

선정지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기준점(70점) 이상을 받고 후보자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순위에 드는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 선정지표

- 전문성 : 경력, 전공(사회복지 관련 경력 및 학과, 행정·법학·회계 등 사회복지법인 이사 활동과 관련된 경력 및 학과, 자격증 소지자)
- 지역성 : 거주지(수원시 거주 또는 재직 여부)
- 종합평가 : 외부추천이사제도 취지 이해,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등 외부추천이사로서 공공성 부합 정도, 경력 및 자격 등 외부추천이사로서 전문성, 외부추천이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

8. 선정 결과 발표 : 8월말 예정(개별 통보,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단,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9. 신청방법

- 후보자 신청서 작성 요령 확인 후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전화 확인

※ E-mail : suwon-aswc@hanmail.net

주소 : (16668)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194번길 19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404호)

- 문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31-898-9853)

10. 제출서류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붙임 양식)
 -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할 때는 해당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양식)
- 기본증명서

※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허위 기재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후보자 선정 취소

11. 기타

- 외부추천이사 활동 내용 :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참여
-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 추천 요청(법인)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요요청 인원의 3배수 추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사 선임(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추천이사는 무보수임.
- 사회복지법인의 추천 요청 상황에 따라 후보자의 희망 분야와 상관 없이 추천될 수도 있음.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후에도 본 협의체에서 개최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역할에 대한 교육이나 외부추천이사 간담회 등에 참여해야 함.
-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활동해야 함.

12.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